

제269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의안 검토보고서

< 의 안 목 록 >	< 제 출 자 >
1.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【성 주 군 수】 (기획감사실소관)
2.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	【성 주 군 수】 (재 무 과 소 관)
3.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【성 주 군 수】 (기업경제과소관)
4. 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【성 주 군 수】 (기업경제과소관)
5.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【성 주 군 수】 (농업기술센터소관)



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 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설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방보조사업 수행자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6조)
- 마.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(안 제7조~안 제14조)
- 바.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기준(안 제15조)
- 사. 상위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존 조항 정비·삭제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1) 입법예고: 해당없음[2022. 9. 7. ~ 2022. 9. 28.]
2) 규제심사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4255(2022. 8. 19.)]
3) 성별영향평가 분석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36420(2022. 8. 19.)]
4)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조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조례 설치 목적,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, 예산 계상, 보조금의 교부, 위원회 구성 및 운영, 보조사업 내역 공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2022년도 제4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
- 「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사업 목적 및 용도

국가지정문화재 구역내 사유지 추가 매입(변경안)

- 국가지정문화재(성산동고분군 4필지) 구역 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 활용 등이 어려워 매수 요청한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여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함.

※ 변경사항 : 기존 3필지에서 1필지 추가 매입

4. 사업기간

- 2021. 11. : 2022년 당초예산 확보(341백만원)
- 2022. 01. : 1차 감정평가 실시(기존 3필지)
- 2022. 03. : 1차 토지매입(기존 3필지)
- 2022. 11. : 2차 감정평가(추가 1필지) 실시
- 2022. 11. : 2차 토지매입(추가 1필지) 실시

5. 소요예산 및 매입면적

- 총사업비 : 341,000천원
- 재원조달 : 국비 238,700천원, 도비 51,150천원, 군비 51,150천원
- 재원별 사업비 : 토지매입 320,000천원, 지장물 21,000천원
- 매입면적
 - 기존 : 10,630m²
 - 변경 : 20,782m²(추가 매입면적 10,152m²)

6.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명세

(단위:m², 백만원)

연번	재 산 표 시				기준 가격	소유자	비고
	리	지번	지목	지적			
계		4필지		20,782	295		
1	성산리	1103	답	1,438	111	김*암	
2	성산리	산121	임	595	9	배*현	
3	성산리	산161-1	임	8,597	77	김*득	
4	성산리	1219	임	10,152	98	안*순	추가

※ 기준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

7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국가지정문화재(성산동고분군 4필지) 인근 사유지 매입을 통해 대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훼손 등 예방을 목적으로, 2022년 3월 1차 기매입한 토지 3필지에 이어, 1필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.

- 관련 총 사업비는 3억 4천 1백만원으로 재원별 사업비는 토지매입 3억 2천만원, 지장물은 2천 1백만원이며, 기존 매입면적 10,630㎡에 금번 매입면적 10,152㎡를 추가하여 총 20,782㎡ 규모의 매입 계획입니다.
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구역 내 재산권 행사로 제약되었던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, 본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 이유

-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,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관련 금융기관 추가와 지원대상 요건 완화로 지원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등 정비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5조제2항)
- 나. 금융기관 정의에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 추가(안 제2조제3호)
- 다.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요건 완화(안 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)
 - 1) 대표자 주소 제한 규정 삭제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22. 7. 7(목) ~ 7. 27(수) / 20일간
 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 [미래지역활력과-2750(2022.5.31.)]
 - 3)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 [가족지원과-25010(2022.6.2.)]
 - 4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,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관련 금융기관 추가와 지원대상 요건 완화로 지원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의 정비, 금융기관 정의에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 추가,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현행 법령의 반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 정 이 유

- 성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.

3. 주 요 내 용
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(안 제3~4조)
- 안전보건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7조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『산업안전보건법』 (법 제4조의2, 제4조의3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

- 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4334(2022.08.25.)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없음[가족지원과-36373(2022.08.19.)]
- 3) 입법예고 : 2022. 9. 13. ~ 10. 3.(20일간)

5. 검토의견

- 본 안전은 성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, 안전보건지킴이 및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 관련 대책 수립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- 상위법 근거에 의한 조례 정비를 통해 농기계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(제5조의3제2항)

나.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개정(안 제8조)

- 1) 1농가당 1대(단, 동력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)로 기준 완화
- 2) 타 지역에 거주하며 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임대 확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
- 2) 입법예고 : 2022. 8. 11. ~ 9. 1.(21일간)
- 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[미래지역활력과-844(2022. 2. 15.)호]
- 4)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없음[가족지원과-7387(2022. 2. 15.)호]
- 5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,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개정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 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성주군의 농기계 이용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